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10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9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,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·조정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의4 별표1,2)

1)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독서실란 다음에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

정보	정보	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	별표2와 같음	
----	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

2) 별표 1의 산업응용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식음료품의 예시로 ‘조리, 제과·제빵’을 추가

3) 별표 1의 일반서비스 계열의 교습과정에 ‘애견 훈련’ 과정을 추가

4) 별표 1의 인문사회 분야 및 계열란에 ‘자연’을 추가

5) 별표 1의 독서계열란 아래에 ※의 교과목 중 “컴퓨터”를 “정보교과”로 변경

6) 별표 2의 특수교육란 다음에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

정보	5.정보교과	가. 시 설 (1) 실습실: 60㎡이상 나. 설비 및 교구 (1) 컴퓨터 1대 이상 다. 그 밖에 필요한 시설·설비 및 교구
----	--------	---

7) 별표 2의 일반서비스 계열의 애견훈련 교습과정의 시설·설비 및 교구 기준에 ‘애견 훈련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’ 기준 마련

○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 조정(안 제2조의4 별표1,2)

- 1)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 중 입시, 보충학습, 논술 교습과정을 입시와 보충학습, 논술 교습과정으로 구분 신설하고 보충 학습, 논술학원의 시설규모 시지역 90㎡이상을 60㎡이상으로, 군지역 60㎡이상을 45㎡이상으로 조정
- 2)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국어계열 학원의 시설규모 90㎡이상을 60㎡이상으로 조정
- 3)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독서계열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독서 계열의 시설규모 시지역 120㎡이상을 60㎡이상으로, 군지역 60㎡이상을 50㎡이상으로 조정
- 4) 별표 2의 예능계열의 음악 및 미술 교습과정의 시설·설비 및 교구 기준을 각각 60㎡이상을 50㎡이상으로 조정
- 5) 별표 2의 독서실계열의 독서실 교습과정의 시설·설비 및 교구 기준에서 열람실: 시지역 - 120㎡이상, 군지역 - 60㎡이상을 열람실: 시 지역 60㎡이상, 군지역 50㎡이상으로 조정

○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(안 제2조의4 별표2)

- 1) 별표 2의 계열 중 ‘음악’을 ‘예능’으로 보완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, 그 밖에 학원의 시설 규모 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,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
- 다만, 부칙에서 시행일을 둘로 나누어 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